##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5363 제출연월일: 2024. 11. 7.

제 출 자:정 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매재산 낙찰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매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여지가 없는 등의 사유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고 없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하여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53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 임.

#### 법률 제 호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 중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제3호"를 각각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제2호의2·제3호"로 한다.

제7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제78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 (제92조제2항에 따라 매각결정 기일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매각결정 기일을 말한다) 전까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매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제78조제6항 중 "매각결정 기일"을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로 한다.

제83조제3항 중 "제78조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을 "매각결정 기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2호 중 "제87조"를 "제77조에 따라 매수가 제한된 자 또는 제8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찰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 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92조의2제4항 중 "제92조제4항"을 "제92조제5항"으로 한다.

제104조의 제목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를 "(체납처분의 중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결정 기일의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납처분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①	제28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	2
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경우	
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	
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 및 <u>같은 법 제56조제1항</u>	<u>같은 법 제56조제1항</u>
제2호・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u>제2호 • 제2호의2 • 제3호</u>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	
니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4
한 법률」 제140조에 따라 징수	
가 유예되었을 경우 그 유예기	
간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제3호·제4호에 따른 납	
부지연가산세 및 <u>같은 법 제56</u>	<u>같은 법 제56조</u>
<u>조제1항제2호·제3호</u> 에 따른	<u>제1항제2호·제2호의2·제3호</u> -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계	
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77조(매수인의 제한) (생 략)	제77조(매수인의 제한)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신 설>

~ ⑤ (생 략)

⑥ 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7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⑦·⑧ (생 략)

·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 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 일(이하 "매각결정 기일"이라 한다) 전에 공매를 취소하면 공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매각결정</u>
기일(이하"매각결정 기일"이라
<u>한다)</u>

(7) · (8) (현행과 같음)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①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매각결
정 기일	 

매 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 1. (생략)
- 각찰자가 <u>제87조</u>에 따라 공 매참가가 제한된 자로 확인된 경우
- 3.·4. (생략) <u><신 설></u>

<u>②</u>·<u>③</u> (생 략).

<u>④</u>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매 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u>.</u>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1. (현행과 같음)
2 <u>제77조에 따라 매수</u>
가 제한된 자 또는 제87조
3. • 4.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찰자
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
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
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
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u>연기할 수 있다.</u>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② 제4회
<u>⑤</u> 제4항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92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제92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액납	4
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는 제9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u>제92조제5항</u>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지 아니하	
며, 이 조 제5항에 따른 배분기	
일에 매수인에게 차액납부를 하	
게 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	제104조 <u>(체납처분의 중지)</u> ①・②
<u>고)</u>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③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	
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	<u>거쳐야 한다</u> .
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1개월	
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I